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2.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8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1999년 1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이유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전 동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총 정원 증원 - 순증 17명(안 제2조)

구 분	총 정 원	
	현 재	조 정 후
정원의 총수	1,246명	1,26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21명	1,2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25명

※ 행정직군 사회복지직 - 중 22명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 △ 5명(별정 7급 상당)

2)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적용 정원(부칙 안 제2조)

구 분	2000. 7. 31까지 정원		2001. 7. 31까지 정원	
	현 재	조 정 후	현 재	조 정 후
정원의 총수	1,353명	1,370명 (증 17명)	1,313명	1,330명 (증 1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28명	1,345명 (증17명)	1,288명	1,305명 (증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25명	25명	2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기존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채용 등 증원 배치하고자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정원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 표1과 표2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1999. 11.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전동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총정원 증원 - 순증 17명(안 제2조)

구 분	총 정 원	
	현 재	조 정 후
정원의 총수	1,246명	1,26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21명	1,2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25명

※ 행정직군 사회복지직 - 증 22명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 △ 5명(별정 7급 상당)

나.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적용정원(부칙안 제2조)

구 분	2000. 7. 31까지 정원		2001. 7. 31까지 정원	
	현 재	조 정 후	현 재	조 정 후
정원의 총수	1,353명	1,370명 (증 17명)	1,313명	1,330명 (증 1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28명	1,345명 (증 17명)	1,288명	1,305명 (증 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25명	25명	25명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행정자치부 자제12200-616. '99. 10. 1.)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사항 : 조치되었음.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246명”을 “1,26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1,221명”을 “1,238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4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표2】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3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인(집행기관의 정원 2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0인(집행기관의 정원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인 67인(집행기관의 정원 67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제2조(정원의 총수) 1,263명 1. 1,238명 2.